

#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14
----------	------

제출연월일 : 2026. 1. .  
제출자 : 하남시장

### 1. 제안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국한된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1) (현행)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 나. 규제의 등록 및 공표
- 다.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라.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 마.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 바.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 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개정조례안: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5. 11. 18.~2025. 12. 8.(20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1) 위원회의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성별균형참여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

2) 소관부서 의견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5항에 이미 규정되어 개별 조례에 중복하여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고 있음

나) 법령 명시 사항을 자치법규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법률 개정 시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 법령 위반 소지의 문제가 발생함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 9. 참고사항: 해당 없음

## 10. 관련부서: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

##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하남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 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등”이란 하남시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조례 등을 입안하고,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전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규제의 심사

제4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심사) 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3.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7.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 8. 관련 민원사무의 첨부서류 및 처리 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지침 및 공표 방법, 자체 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조례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제7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수렴)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심사 기한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자체 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심사 절차의 준수)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조례 등의 법제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

회의 심사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장 규제의 정비

제12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규제정비를 위하여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준용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존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시장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조례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전부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 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 개혁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참석자 등에 대하여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규제 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규제신고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22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기획조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팀장 직위·성명	대외협력팀장 황광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정대현 (031-790-6014)

#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조(수당), 제22조(평가 및 인센티브)

###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참석 수당 및 규제개혁 성과 인센티브 지급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장(조대근)

## 관계법령 발췌서

### 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키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서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 of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 of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 of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of 3개월 전까지 규제 of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규제 of 재검토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of 재검토키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 of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 of 재검토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 of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키 of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키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규제 of 재검토키 of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 of 작성·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

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2. 법 제5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사전협의, 법제심사 의견 및 검토 결과

조항	[조례안 제16조] 위촉직 위원 성별균형참여 기준 반영
제출자 및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자 : 하남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li> <li>○ 의견 : 개별 조례에 「양성평등기본법」상 위촉직 위원 성별균형 참여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우리시의 정책의 결정에서 양성평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ul>
검토 결과	<p><b>[반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서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그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그대로 적용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음.</li> <li>- 추후 법률 개정 시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 위반 소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li> </ul> <p>→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및 「하남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법령을 준수하여 <u>조례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u></p>

조항	[조례안 제21조] 규제신고센터 운영 사항
제출자 및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자 : 법무감사관</li> <li>○ 의견 : 규제신고센터 기능,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li> </ul>
검토 결과	<p><b>[반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인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의 일환으로 규제 합리화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li> </ul>